

의안번호	제 484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4월 일 (제 289 회)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4월 6일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4
------	-----

제출연월일 : 2010. 4. 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함(현행 조례 부칙 제2항 단서)
- 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용시험 의무 응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
- 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안 제7조)
- 라.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의 면제근거 마련(안 제10조 단서)
-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2010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
-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9.11.2. ~ 11.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를 "청주교육대학교"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이하 "공립초등학교"라 한다)"를 "충청북도립초등학교"로, "초등교사"를 "우수한 초등교사"로 각각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청주교대"를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로, "공립초등학교"를 "충청북도립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로,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각각 한다.

제3조 중 "공립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중 "공립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6조 중 "2년간"을 "4년간"으로, "다만"을 "다만,"으로 각각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재학생 1학년, 2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4년

2. 재학생 3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3년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3.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 "다음 각호의 1"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장학금의 반납)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한 때

부칙 제2항 중 "2007학년도"를 "2012학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u>(이하 “<u>교육감</u>”이라 한다)가 <u>청주교육대학교</u>(이하 “<u>청주교대</u>”라 한다)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u>충청북도립초등학교</u>(이하 “<u>공립초등학교</u>”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u>초등교사를</u>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u>의한</u>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u>쌍학생</u>”이라 한다)는 <u>청주교대</u>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u>공립초등학교</u>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u>청주교대총장</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u>교육감</u>이 정한다.</p> <p>제3조(장학생 수)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u>공립초</u></p>	<u>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감</u>이 <u>청주교육대학교</u>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u>충청북도립초등학교</u>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u>우수한 초등교사를</u>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u>쌍학생</u>”이라 한다)는 <u>청주교육대학교</u>(이하 “<u>청주교대</u>”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u>충청북도립초등학교</u>(이하 “<u>초등학교</u>”라 한다)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u>청주교대총장</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u>충청북도교육감</u>(이하 “<u>교육감</u>”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3조(장학생 수)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u>초등학</u></p>

현 행	개 정 안
<u>등학교</u>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u>제4조(장학금)</u> ① <u>제2조의 규정에 의한</u>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u>②</u>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u>4년 이내로 하되, 지급기간을 이유로 제조</u> <u>제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u>	<u>교</u>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u>제4조(장학금)</u> ① <u>제2조에 따른</u>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u>②</u>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u>4년 이내로 한다.</u>
<u>제5조(장학생의 의무)</u>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u>공립초등학교</u>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u>제5조(장학생의 의무)</u>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u>초등학교</u>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u>제6조(임용시험의 응시)</u>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u>2년간</u>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제6조(임용시험의 응시)</u>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u>4년간</u>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제7조(복무의무)</u> ① <u>장학금을 지급 받은</u>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u>제7조(복무의무)</u> ① <u>장학금을 지급 받은</u>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현 행	개 정 안
<p><u>공립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기간에는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u>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u>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u>휴직한</u> 기간과 <u>직위해제 및 정직된</u> 기간 <p>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u>교육감은</u> 장학생이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u>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u>기타</u>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p>② <u>교육감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u></p>	<p><u>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u> <u>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u> 근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학생 1학년, 2학년부터</u>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4년 2. <u>제학생 3학년부터</u>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3년 <p>② <u>제1항에 따른</u> 기간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u>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그 밖에 법령에 따른</u>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u>휴직한</u> 기간 3. <u>직위해제 및 정직된</u> 기간 <p>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u>교육감은</u> 장학생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병역법</u>」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u>그 밖에</u>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p>②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u> 지급정</p>

현 행	개 정 안
<p>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p> <p>1. ~ 5. (생략)</p> <p>제10조(장학금의 반납)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p> <p>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p> <p>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3. 제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 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u>남은 기간에</u>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장학금의 반납) 교육감은 장학생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u>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u></p> <p>1.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p> <p>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3.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한 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부칙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 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다. 단, 지급기간은 <u>2007학년도</u>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부칙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 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 다. 단, 지급기간은 <u>2012학년도</u>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